

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32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철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박상훈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5. 27.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20. 선고 2018가소7958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9월분 전기요금 1,219,670원 중 842,505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2층 집합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층 E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다. 피고와 관리단(대표자 회장 F)은 2016. 12. 14.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 받고, 이를 각 입점 호별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각 호의 전기료를 산정한 후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왔다.

마.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2018년 9월분 전기료 32,115,170원을 고지 받았고, 원고로부터 E호에 대한 2018년 9월분 전기료 1,219,670원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관리단과 체결한 2016. 12. 14.자 이 사건 관리계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고 이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계약은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F이 체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게다가 피고는 관리단을 형식상으로 조직해 놓은 후 그 관리비를 영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년 9월분 전기요금 1,219,670원 중 부당하게 잘못 산정하여 징수한 377,165원을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르면 관리비를 산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피고는 E호에 대한 2018년 9월분 전기요금으로 842,505원만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1,219,670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377,165원을 과다 징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8년 9월분 전기요금 1,219,670원 중 842,505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법적인 법률관계에서 관리비 채권과 징수한 관리비는 여전히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귀속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기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관리단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주체가 관리단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관리단을 형식상 조직해 놓고 그 관리비를 영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입주 호별로 2018년 9월분 전기료를 산정하여 징수한 후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전기료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인 이 사건 관리계약에 관하여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F이 체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F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과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4년경부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관리행위가 시작된 이후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피고의 관리비 징수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단과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 제2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비의 산출 및 징수는 피고가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나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고, 관리규약 제35조(원고는 이 부분 관리규약이 위변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대행징수인 세대별 사용전기는 호별사용량으로 산출부과하고, 공용부분은 전체금액 - 세대금액 = 공용금액으로 하여, 공용금액 전체를 호별 분양면적으로 하여 백분율 산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8년 9월분 관리비 산정 시에 원고에 대하여 산출한 전기요금은 위 관리규약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전기요금의 배분에 관하여 가능한 산정 방법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실체법적인 법률관계에서 피고가 징수한 관리비는 관리단에 귀속한다는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전기료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 판사 이효인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유지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